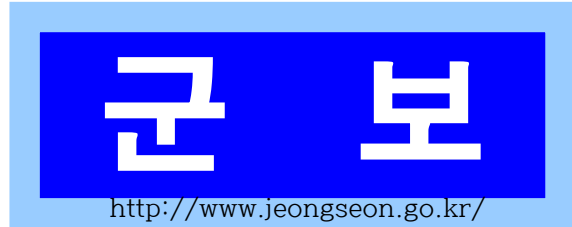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399호 2016. 10. 19.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6-108호 2016년 가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 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6-868호 2016년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 공고 2
- 정선군 공고 제2016-871호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관한공고 4
- 정선군 공고 제2016-877호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7
- 정선군 공고 제2016-888호 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8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6-108호

가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입산통제 구역의 지정·해제)의 규정에 따라서 정선군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정 선 군 수

1. 통제기간

- 가을철 : 2016. 11. 1 ~ 12. 15(45일간)

※ 산불조심 기간 중 전 산림에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을 금지합니다.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현황

가.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

구 분	관내 민유림(ha)	입산통제구역(ha)
	38,100	12,768

나. 등산로 개방·폐쇄구역 지정현황

구분	합계		개방		폐쇄	
	노선수	거리(km)	노선수	거리(km)	노선수	거리(km)
	41	148.5	10	44.2	31	104.3

3. 기타사항

가. 산불조심 기간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입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므로 입산신고를 하지 않고 입산 할 수 있습니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6-686호

2016년도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 공고

2016년도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정 선 군 수

1. 모집인원 : 90명(정선읍 13명, 고한읍 5명, 사북읍 5명, 신동읍 10명, 화암면 12명, 남면 12명, 여량면 9명, 북평면 9명, 임계면 15명)
2. 종사업무 : 산불예방 활동 및 감시, 산불진화, 각종 산림사업 등
3. 근무기간 : 가을철 2016. 11. 1. ~ 2016. 12. 15.(배치기간은 기상상태 등 정선군 사정에 따라 조정)
4.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5. 응시자격 : 모집공고일(2016년 10월 13일) 현재 정선군내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이 정선군으로 되어 있는 신체건강하고 야간산불 등 비상 시 대비 각 근무지(해당 읍·면사무소)에 20분내 소집 가능한 자.
6. 대상자 확정발표 : 2016. 10월 중 해당 읍·면별 개별통보
7. 확정 대상자 처우 : 해당 읍·면 산불유급감시원으로 채용(1일 임금 48,500원)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교부 및 접수기간: 2016. 10. 13. ~ 10. 19.
 - 정선읍사무소(560-2604), 고한읍사무소(560-2614), 사북읍사무소(506-2624), 신동읍사무소(560-2634), 화암면사무소(560-2644), 남면사무소(560-2654), 여량면사무소(560-2664), 북평면사무소(560-2674), 임계면사무소(560-2684)
 -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접수처 제출
9.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 1통(신청자 직접방문 후 작성) -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부착
 - 나. 이 력 서 : 1통 다. 주민등록등본 : 1통
 - 다. 채용신체검사서 : 1통(병원·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0.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부담입니다.
 - 나. 본 모집공고 계획은 우리 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별도 공고).
 - 다.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위치관제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선발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 라.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선군 환경산림과 산림보호팀 및 해당 읍·면 산업개발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마.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될 시 선발을 취소한다. 끝.

산불유급감시원 응시원서

종 사 업 무	산불예방 및 산불감시		응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핸 드 폰		
상기 본인은 2016년도 가을철 산불유급감시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2016년 월 일 정선군수 귀하			사 진 (3cm×4cm)또는 반명함판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사진(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부착)1매.

산불유급감시원 응시표

종 사 업 무	산불예방 및 산불감시		응시번호	
성 명			※시험일자 시험장소	
주민등록번호				
2016년 월 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공고 제2016-871호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 10. 11.

정 선 군 수

1. 노선지정(변경)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총연장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폐지·변경) 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신동읍	리도	조방선	신동 208호	조동리49 4-6	방제리 87	4.0 (0.164)	방제리 190-36	6.0	6.0	도 로 선 형 변 경

2.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건설방재과)

3. 사업시행기간 : 2016. 09. . ~ 2016.12. .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물건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5.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 실음생략

◦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정선군청 건설방재과

- 도로의 노선지정도 및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건설방재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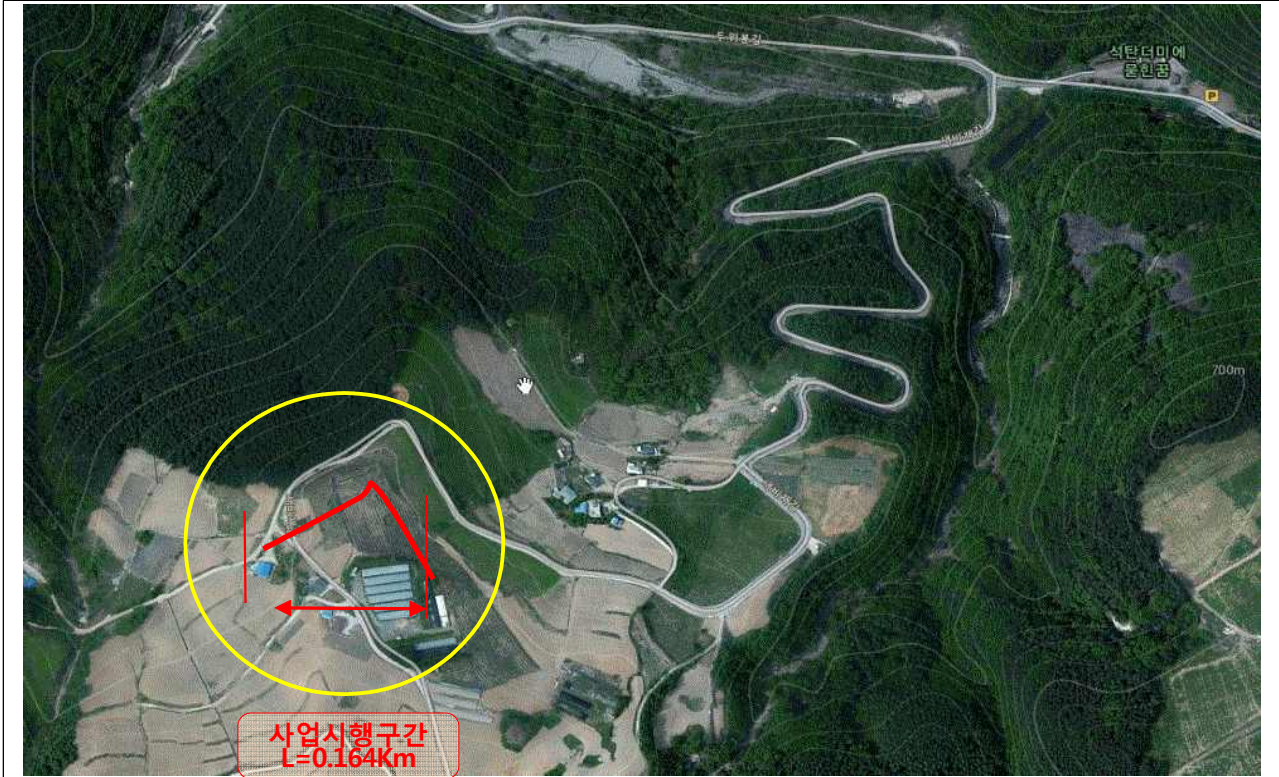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노선명 : 신동읍 리도 208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면 적	소 유 자			비고
				(㎡)	(㎡)	성명	주 소	지분	
1	신동읍 방제리	산87-226	임	66	66	국(산림청)			
2	신동읍 방제리	190-1	도	2,571	1,088	국(국토교통부)			
3	신동읍 방제리	산87-227	임	131	131	(국)산림청			
4	신동읍 방제리	190-25	전	13,299	74	박세기	신동읍 방제리 443-154		
5	신동읍 방제리	190-2	전	1,782	80	임종섭	태백 철암 279-2		
6	신동읍 방제리	190-4	전	2,411	278	변영남	경기 안산 동안구 관악대로 346,1201호		
계				20,260	1,717				

노 선 지 정 도

위 성 사 진



정선군 공고 제2016-877호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1339-1번지 일원 남평휴양단지는 정선군 고시 제1999-50호(1999.06.10)로 결정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과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으로 경과조치 되어 정선군 고시 제2003-42호(2003.05.09)로 결정된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주소, 성명, 전화번호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4일

정 선 군 수

가.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나. 위 치 :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1339-1번지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라.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면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마.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및 북평면사무소

바.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이상(2016. 10. 14. ~ 2016. 10. 31.)

사.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공람 기간 내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및 해당 북평면사무소 서면 제출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건축과 (033-560-2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6-888호

「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및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및 시행규칙』의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 위임 규정을 초과하여 규정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 조항 변경

- 「지방자치법」 제130조 ⇒ 「도로법」 제117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안 제1조)
- 「도로법」 제40조 ⇒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안 제2조제2항)

나. 상위법령 일부 개정사항 반영

- 과태료 부과 금액 조정(2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안 제3조제1항)
-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함

다.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함(안 제3조제1항 제4호)

-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 변경·삭제(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1. 도로 위에 상품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2. 도로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수리 또는 용접 등의 작업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로의 본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정선군수(안전건설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수 안전건설과

- 연락처 : 전화(033-560-2486), 팩스(033-560-2099)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안전건설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로, “대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로, “각호의 1에 해당되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로점용자가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를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u>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u>도로법 제2조</u>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u>도로법 제40조의 규정</u>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u>군수는</u> <u>정당한 사유없이</u>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u>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u>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u>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u>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u>관하여</u> <u>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u> 제1조(목적) ----- 「도로법」 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 필요한 사항-----. 제2조(용어의 정의) ① ----- 「도로법」 제2조 -----. ② -----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 제3조(과태료) ① <u>도로점용자가</u>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u>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u> 2. <u>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u> <삭 제> <삭 제> ② <u>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u> -----. <삭 제> 제4조(규칙) ----- 필요-----.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을 “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부과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를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산정방법	과태료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	1. 1㎡ 이하 2. 1㎡ 초과 시 1㎡이내 마다 10만원씩 더한 금액부과	5만원 2백만원 (상한액)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	1. 1㎡ 이하 2. 1㎡ 초과 시 1㎡이내 마다 10만원씩 더한 금액부과	10만원 1백50만원 (상한액)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u>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u>부과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u> ② (생략)	<u>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u>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 -----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